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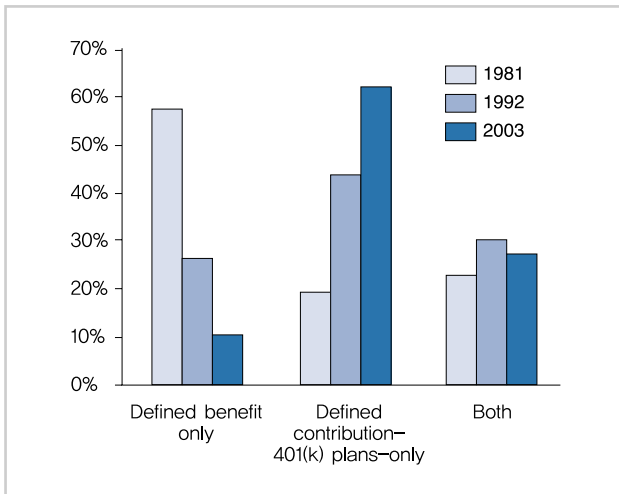


구미 주요국의 기업연금 개혁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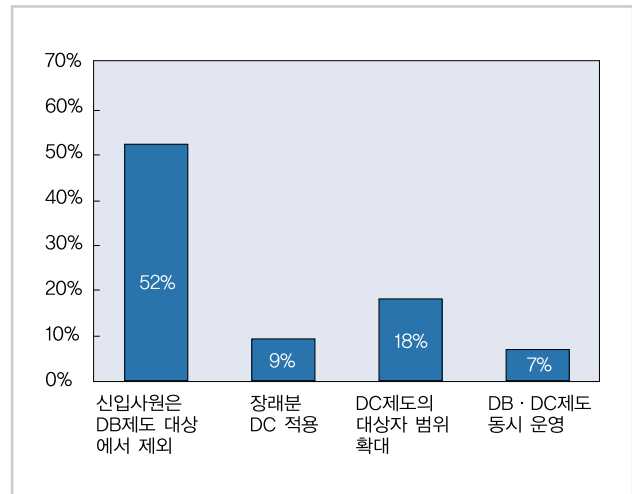
최근 구미 주요국에서는 기업연금의 적립부족 상태가 심화됨에 따라 확정급부형 연금의 적립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나, 비용부담 증가를 우려한 기업들은 확정기여형 연금으로 이동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.

- 최근 미국과 유럽의 주요국들은 공적연금 및 기업연금에 대한 제도 개혁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음.
-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인 퇴직급부회계기준 적용, 세계적인 연금운용환경 악화, 저금리 지속 등을 배경으로 기업연금의 적립부족이 더욱 심화된 데 기인함.
- 퇴직급부회계기준에서는 연금채무를 시가로 평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, 미래에 지급하기 위해 쌓아두어야 할 적립금 수준은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크게 부족한 실정임.
- 2000년 이후 운용환경 악화로 확정급부형 연금의 실제 수익률이 기대수익률을 하회하였을 뿐 아니라 각국 정부가 기업연금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적립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확정급부형(DB)에서 확정기여형(DC)으로 기업연금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음.
- 또한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종신연금의 비용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도 연금제도 개혁의 배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.

〈그림 1〉 미국의 DB, DC 제도 도입현황



〈그림 2〉 영국의 과거 5년간 제도개선 내용





- 미국에서는 파산기업의 연금채무를 인수한 연금지급보증공사(PBGC)의 적자액이 228억달러에 달하는 등 많은 가입자의 연금수령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 「연금보호법」을 제정하였으며, 동 법률을 2008년부터 시행할 예정임.
 - 연금보호법에 따르면 미적립채무의 상각기간이 최장 3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되고, 부족한 퇴직연금 자산을 5년내에 100% 수준으로 보강해야 하며, 적립부족이 발생한 제도는 급부설계(급부 증액, 일시금 지급 등)에 제한을 받도록 하였음.
 - 한편 미국재무회계기준 개선안에서는 연금채무 평가방법을 ABO(누적급부채무)에서 PBO(예측급부채무)로 변경하고, PBO와 연금자산의 차액을 부채 또는 자산에 계상하는 것을 요구하는 등 연금채무에 대한 적립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.
- 이미 미국에서는 기존 사원의 과거근속분에 대해서만 DB를 적용하거나 신입사원의 경우 DC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DB에서 DC로 이동하는 사례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음.
 - 미국의 Fortune 100대 기업 가운데 DC제도만을 도입한 기업은 1998년 10개사, 2002년 17개사, 2005년 36개사로 나타났으며, 특히 최근 3년간에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임.
- 영국에서도 적립규제 강화 및 연금제도 개선안이 기업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확정급부형 연금상품의 가입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.
 - 2005년 개정 연금법에서는 연금보호기금(PPF)을 통해 기업이 적립부족에 해당하는 징수금을 추가로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, 기업연금의 정보공시를 강화하였음.
 - 또한 2006년 5월 영국 정부는 공적연금 지급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늦추고, 기업연금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DC제도(국가저축제도)를 제안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안을 발표하였음.
- 네덜란드의 기업들은 유럽의 상장기업에 의무화된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연금채무를 계상해야 하는 상황이나, 공동운영형 DC의 도입을 통해 이에 대응하고 있음.
 - 공동운영형 DC는 통상의 DC와 달리 ① 자산운용은 개인단위가 아닌 제도 전체에서 이루어지며, ② 개인계좌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지만 ③ 회계적으로는 DC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구조임.
 - 동 제도의 운영이 가능한 것은 기업연금의 적립상황이 비교적 양호(2005년 평균적립비율 122%)해 연금지급액의 삭감 가능성이 낮다는 데 있음.
 - 한편 기업연금의 재정상황이 양호한 네덜란드에서도 최근 연금운용환경 악화를 교훈으로 기업연금의 적립규제를 강화하고 있음.
 - 강화된 적립규제에서는 종래 적립기준인 105% 유지에 추가하여 어려운 경제환경에서도 97.5%의 확률로 적립수준이 105%를 하회하지 않도록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요구함.